

(재)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한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3) 상정
- 제15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9. 5. 13)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배 효 원)

가. 제안이유

-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업무의 중요성과 당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과 부천시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사무국장을 보직토록 지적 되어 이를 시정하며
- 사무국장은 정원 외로 되어 있어 정관개정을 통하여 문화관련 전문가의 영입 등으로 전문적인 재단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관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 직원을 총37명에서 사무국장(1명)을 정원에 포함하여 사무부서 정원을 38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사무국장 채용시 재단운영 실무 분야의 사무는 국장의 전결로 하고 상임이사는 대외적인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무규정의 개정이 요구됨.</p>	<p>○ 사무국장에 대한 사무분장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나, 이사회 개최 전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 사무분장 등의 당면사항 협조를 위한 간담회 일정을 추진하겠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정관의 개정에는 동의를 함. 다만. 향후 부천문화재단 사무국장 채용시 재단 내부적인 사무에 대한 권한은 사무국장에게 대폭 위임이 되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부천시 문화발전을 위한 대외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바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제405호
의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출년월일 : 2009.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2007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업무의 중요성과 당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과 부천시와의 가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사무국장을 보직토록 지적 되어 이를 시정하며
- 사무국장은 정원 외로 되어 있어 정관개정을 통하여 문화관련 전문가의 영입 등으로 전문적인 재단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정관의 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 직원을 총37명에서 사무국장(1명)을 정원에 포함하여 사무부서 정원을 38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9조)

□ 관련규정

-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 6조(정관)제2항
- 재단법인부천시문화재단 정관 제 34조(정관의 변경)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중변경안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정관중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정원은 38명 이내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부천시장의 승인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안)
[정 관] 제5장 사무부서 및 구성인원 제29조(사무부서)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u>정원은 37명</u> 이내로 한다.(개정 2007. 5.30)	[정 관] 제5장 사무부서 및 구성인원 제29조(사무부서)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되 <u>정원은 38명</u> 이내로 한다.